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29일, 한민수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9.) 상정,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민수의원)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가해자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사제 총기 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방 범죄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실제로 유튜브나 SNS에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을 상세히 보여주는 영상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어 이와 같은 불법 정보를 이용자들로부터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매매 등에 대한 정보와 자살유발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등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매매 등에 대한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는 서면의결이 허용되지 않아 대면 심의 및 의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방미심위의 회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1)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같은 조 제4항2)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3)에 따른 촬영물·복제물 등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들은 해당 사유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마약류 거래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 장기매매, 개인정보매매, 총포 제조정보, 저작권 침해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기존에 방미심위는 전체회의는 2주에 1회, 법 제23조제5항4)에 따라

-
- 1) 법 제23조(회의 등)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법 제23조(회의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4) 법 제23조(회의 등)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성된 4개의 소위원회 중 방송심의소위와 광고심의소위는 주 1회 대면 회의, 통신심의소위는 주 2회 대면 회의, 디지털범죄심의소위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매일 서면의결(전자심의)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식으로 운영되었음.

- 통신심의를 통한 정보의 차단이나 삭제와 같은 심의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 것은 심의위원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함으로, 심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
- 그러나 성폭력 등의 촬영물·복제물의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고, 그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며 즉각적인 구제가 필요한바,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성이 있을 때 서면의결 대상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개정안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면회의를 통하여 심의하는 경우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나, 그 확산 속도 및 피해의 중대성과 회복 불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심의와 차단조치가 필요한 정보에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취지라는 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방미심위가 현재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대면회의를 하는 현행법의 취지는, 안건에 대해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황운하의원, 한민수의원, 이재관의원, 조인철의원, 김우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